

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2-68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(주)알피코드

2. 조치내용

기관에 대한 조치 : 전자금융업 등록취소

3. 조치이유

가. 등록업무 미영위 및 폐업

-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거나, 법인의 합병이나 파산이나 영업을 폐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
- (주)알피코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('XX.XX.XX.') 등록 이후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하지 않았으며,
- '△△.△△.△△. 폐업(국세청)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4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